
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5. 2. 24.

제 안 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농업기계구입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조례안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

-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제4조
- 농지법 제2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3조
- 주민등록법 제6조
-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
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1. 조례안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기계”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구미시민으로서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 및 범위)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 **1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**로 하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는 지원대상에서 **제외**한다.

1. 타 법령이나 조례, 지침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농업인 중 기종별 사용년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동일 또는 유사기종의 농업기계
3. 동일 세대내 다른 농업인 명의의 농업기계 구입
4. 중고 농업기계

③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구입가격의 100분의 50이하를 보조하되, 농업인 또는 농업기계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농업기계 구입보조금 지원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금의 총액이 농업기계 가격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(지원신청 및 교부결정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농업기계구입보조금 지원 신청서 【별지 제1호서식】

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구미시의 농업인 여부 및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농업인의 각 세대단위로 1회, 1대 지원을 원칙으로 신청을 심사하여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.

⑤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5조(지급시기)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농업기계 구입 실적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)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
2.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
3.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제7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농업기계구입보조금 지원 신청서									
신청자	성명 (대표자)				주민등록번호 (조직명)				
	주소				전화번호				
신청 내용									
농업 기계명	제조사명	규격 (형식명)	수량 (대)	단가 (천원)	기대금액				구입 희망일
					계	시비	융자	자부담	
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
신청인(대표) (인)									
구미시장 귀하									
접수처 : 관할 읍면동사무소									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지원신청 및 교부결정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농업기계구입보조금 지원 신청서 【별지 제1호서식】 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구미시의 농업인 여부 및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농업인의 각 세대단위로 1회, 1대 지원을 원칙으로 신청을 심사하여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.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. (신설)	제4조(지원신청 및 교부결정) ① 제정안과 같음 1. 제정안과 같음 2.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⑤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한다.